



지하철파업과 다시 보는 노조전임자 문제

김 수 곤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마찰 없이 일단락 지어졌다. 같은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통신 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으로써 민노총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지하철 노조가 쉽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지하철 노조는 그전부터도 여러 번 파업을 단행하여 시민의 발을 묶은 바 있고 소위 준법투쟁이라는 이름 하에 감속운행도 단행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시민으로부터 냉대를 받은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첫째,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구조조정을 수용하고 있건만 정부 산하기관인 지하철 노조만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 공기업의 속성이긴 하지만 지하철 공사는 엄청난 적자운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1인당 노동생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노선거리당 취업인원은 다른 데 보다 많은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동정을 받기가 힘들었다. 셋째, 지하철노조는 인원감축은 고사하고 오히려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로 임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서도 임금총액의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우둔한 전략이 발목이 잡힌 시민들로 하여금 격분케 했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당면한 구조조정을 실천함에 있어서 노조의 반발 때문에 특히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사실 현재 200만에 가까운 실업자가 나타났지만 약 100만 정도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퇴출된 사람으로서 이는 곧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그 동안 고용조정을 해 왔다는 증거이다. 다시 말해서 1999년이야말로 정부부문과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시기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민노총이 강력하게 투쟁을 선언했던 것이라 본다. 만약에 정부가 이에 굴복을 했더라면 시민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곧 대기업 구조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그러니 민노총으로서는 중재에 따른 법규 및 절차를 따르지 않음으로

써 오히려 정부로 하여금 쉽게 개입할 수 있는 구실마저 제공한 셈이다. 정부로서는 1987년 민주화선언 아래 과격한 노동운동이 법질서를 해치면서 까지 강행됨으로써 오는 경제적 파탄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천명한 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단호한 태도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기어코 필요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예고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부문과 학교, 교통, 병원, 건설 등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국제경쟁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서 흔히 독과점적인 위치를 향유하기 때문에 이로부터 올 수 있는 경영해이가 노동조합의 힘을 구실로 해서 팽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서 제조업은 해외시장에 완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경쟁력을 잃으면 즉시 폐쇄하거나 인력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볼 때, 지난 날 왜 많은 근로자들이 제조업의 3D를 기피하고 서비스 부문으로 몰려갔는지 알 수 있다. 서비스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국제 수준에 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들의 제조업 이탈현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제조업 노동시장만의 일이라기보다는 전국 노동시장의 문제이고 이는 다시 말해서 얼마나 공공 및 서비스 부문의 경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지난 번 지하철 파업 때 한국노총은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민노총의 사려 깊지 못한 불법적 과격 행위에 대해서 말려들지 않겠다고 하는 성숙한 노조의 의사표시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 장차 반드시 경쟁상태에 놓이게 될 민노총에 대해서 묵시적인 경계의 태도를 취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민노총이 출범한지는 오래 되었으나 합법적인 전국연맹으로 인정받는 데는 한국노총의 지지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노총으로서는 비록 장차 라이벌이 될 것으로 예견하기도 했지만 근로자 단결권의 보호라고 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다보니 민노총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힘쓰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한국노총은 정부를 통해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처벌하게 만든 개정 법조문을 다시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한국경총은 이미 노사정위까지도 탈퇴할 것이라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와중에 민노총은 아무런 공식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한국노총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처벌조항을 삭제하는데 성공한다면 그 전리품은 자동적으로 민노총에게도 할당될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명분이 탄탄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민노총이 발벗고 나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정부로서는 지난 번 대선 때 힘이 되어 준 한국노총을 명분없는 일이라 해서 쉽게 냉대할 수 만은 없을 것이라는 계산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법을 제정한 지 일년도 못되어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이 명분이 약할 뿐만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겨우 세워놓고 이를 깨뜨린다고 하는 점에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신인도에 금같 우려가 없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활동에만 전념하는 조합간부, 즉 전임자(專任者)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1920년대에 소위 company union 이라는 것이 조직되었는데, 이들은 사용자가 비밀리에 부패한 어용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조합 간부에게 모든 편의와

임금까지도 지불한 적이 있었다. 때문에 Wagner 법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일하지 않으면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조합도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전제하에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는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도 과거 어용조합이 많았을 때는 사용자가 조합간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본뜬 것이 우리의 관행이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어용성 시비가 없어지고 조합이 당당하게 (민주적으로) 對사용자 투쟁을 하게 되자 더 이상 노조간부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현명한 경영자들이 단합해서 이것을 성취한 것이지 정부의 힘이나 법조문을 통해서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와 같은 어용노조 시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기 때문에 지난 번 법개정에 이 조항이 설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철칙” 때문에 오히려 사용자로 하여금 전임자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못하게 했고 이를 어겼을 때에 처벌한다고까지 규정하였다.

말하자면 우리 나라 경영자들이 못나서 제 할 일을 못하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사용자의 그 같은 행위를 불법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를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는데 있고,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외국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한편으로 우리 나라 경영자가 요구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수긍을 하면서도 처벌조항까지 설치한데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전임자 임금을 달라고 하면 부당노동행위인데 반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전임자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지 못하면서 경영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상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이 이상한 규정을 세계인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비웃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들어서 노동조합은 오히려 이 처벌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폄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채 노사정위를 탈퇴하겠다는 것으로 자기네 입지를 정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현실을 어떻게 정치가들이 일일이 헤아릴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국민 여론이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가 한국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처벌규정을 삭제해 버린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같은 조항을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도 더욱 경영자의 입지를 약화시켜 전임자 임금지급이 당연시되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한국노총의 요구를 거부해 버린다면 한국노총은 민노총과 합세하여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가져올 노사관계 및 한국경제에 대한 파국은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음이 있다. 때문에 나온 것이 정부와 기업이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전임자임금을 지급키로 한다는 대안인 것 같다. 그러나 이는 기업이 그 기금에 출연한 만큼 전임자 임금지급을 계속하게 됨으로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하게 되며, 또한 정부가 부담한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이것은 혹 폐려다 혹 붙이는 결과가 되고 만다.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조합의 협조를 얻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제 3기 노사정위원회가 곧 발족될 것이므로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기 바란다. 실물경제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전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전 근로자가 이에 동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기업, 대기업, 금융 등의 개혁이 동시에 일어나서 근로자가 “우리만이 고통의 전담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 및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세계화된 시장에서 기업의 생존은 어려울 것이고 실업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할 때 노조의 협조도 얻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필자 약력

고려대학교 정치학사(1957)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 석사(1963)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산업관계학 박사(1971)

캐나다 사스카치완주립대 조교수(1972~73)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원장(1974~84)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1984~현재)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1985),

경영대학원장(1990), 부총장(1997~98)

한국 노동경제학회 회장(1986)

한국 노사관계학회 회장(1990)

교육개혁위원회 위원(1995~96)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 법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우선 초청
- 연구원 주최 행사에 5인까지 무료 참가 가능
- 연구원이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 무료 제공
- 법인 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개인 회원에 대한 서비스

- 연구원 주최 행사에 초청
- 행사 참가비 할인
- 연구원이 발간하는 일부 간행물 무료 제공

- 후원회비는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공제 가능

-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전화) 551-3339(팩스)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타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

E mail : igenet@igenet.com